

[별표3]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2019년 1월 1일 적용]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원)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일반대상자 : 15% 의료,경감대상자 : 9%,6%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4,120
60분 이상	21,690
90분 이상	29,080
120분 이상	36,720
150분 이상	41,730
180분 이상	46,130
210분 이상	50,190
240분 이상	53,940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별표4]